

**「수출식품 영문증명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23호, 2009. 10. 5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출식품 영문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를 간소화 및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수출식품 영문증명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발급 예에 따라 처리

가. 수출식품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시 영업 허가(신고)서, 품목제조보고서를 구비 서류에서 삭제

다. 영문증명 신청업체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가능토록 서식 개정

나. 수출식품 영문증명서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라. 수출식품영문증명서 서식 개정

(1) 영문의 외국어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별지서식 각 항을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 받아 제출하는 경우 영문증명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59호, 2009. 10. 15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 2. 6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에 대한 위생 및 품질관리 의무화의 일환으로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의 수출국 제조·가공업체 위생 점검의무를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생 점검에 필요한 점검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을 제정고시하였습니다.